

조례 제 호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 시행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제1호 “정수관-충무국장”을 “정수관-도시국장”으로 하고, 제2호 “분임정수관-세무과장”을 “분임정수관-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안)
제10조(운영관리자 및 회계관리 공무원지정) (생략) 1. 징수관 - <u>총무국장</u> 2. 분임징수관 - <u>세무과장</u> (이하 생략)	제10조(운영관리자 및 회계관리 공무원지정) (현행과 같음) 1. 징수관 - <u>도시국장</u> 2. 분임징수관 - <u>도시개발과장</u> (현행과 같음)